KOSHA GUIDE

C - 109 - 2017

4. 주체별 주요 임무

4.1 발주자의 주요 임무

- (1) 공사 수행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, 발주자는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에서의 화학물질 및 취급설비에 대한 유해·위험정보(가스누출·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 등) 및 비상조치계획 등의 정보를 도급업체에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.
- (2) 도급업체 선정 시 재해율, 안전작업 수행능력 등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사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3) 다수의 도급업체 작업이 혼재되어 수행되는 경우, 단위 작업에 대한 위험은 물론 각 작업이 다른 작업에 어떤 위험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(4) 근로자가 공정 시설에 대한 개·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험물질 등의 제거, 격리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에 다음과 같이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(가) 안전작업허가서는 발주자가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승인한 후 발급하다.
- (나)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할 주요 고위험 작업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, 안전작업허가 절차의 "예"는 <부록 2>를 참조한다.
 - ① 화기작업
 - ② 밀폐공간 작업
 - ③ 정전작업이 필요한 작업
 - ④ 설비 해체 및 설치작업
- (다)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
- (라) 그 외의 안전작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P-94-2013(안전 작업허가 지침)을 참조하여야 한다.
- (5) 화기작업, 밀폐공간 작업 등 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문제점이 발견되면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통보·개선 토록 하여야 한다.